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2 선고 2022나16206(본소), 2022나16213(반소) 판결

[청구이의 ·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박창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창훈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7. 12.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19가합65688(본소), 2021가합 5093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1,087,087원 및 그중 138,652,252원에 대하여는 2021. 1. 29.부터 2022.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2,434,835원에 대하여는 2021. 1. 29.부터 2023.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 9. 30. 작성 증서 2019년 제59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62,174,1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외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462,174,17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9면 9행부터 10면 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H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G법은 이러한 H조합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H조합의 신용사업을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H조합의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서 자금차입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H조합의 공익적 목적 및 G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반 회사인 F의 채무를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 적법성이나 효력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간에 462,174,174원에 이르는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원고의 보증 외에 별다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9. 9. 3.부터 I에 철강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미리 표시한 원고의 보증의사를 믿고 I에 철강재를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31,087,087원(= 462,174,174원 × 50%) 및 그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138,652,2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등 참조)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92,434,835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견종철, 판사 이형원, 판사 김은경